

##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회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제출연월일 : 2005. 4. 1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 가. 근거법인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2004.2.9공포, 2005.2.10시행)으로 인해 조례제정의 근거 조항인 동법 제22조가 제27조로 개정되었고,
- 나. 청소년지도위원 인원수 부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으로 각 동 협의회별 인원수 상향조정 건의 및 청소년보호·육성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 근거조항 수정 : 제22조 ⇒ 제27조(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 나. 지도위원 수 조정 : 10인 ⇒ 15인(안 제2조제2항)
- 다. 위원증 기재사항 수정 : 제22조 ⇒ 제27조(안 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해당없음

##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22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인”을 “15인”으로 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지도위원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내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u>10인</u>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p> <p>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법 제27조</p> <p>② 15인</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5조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u>청소년기본법</u> <u>제22조</u>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p> <p>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 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p> </div>	<p>[별표]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 「<u>청소년기본법</u>」 <u>제27조</u> ----- ⑥ (인)</p> </div>